

의안번호	2124130
의 퇴 인	서병수 의원
회 답 일	2023.09.14.
추계번호	23C385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00만원(연평균 3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1.8 ¹⁾	3.6	3.6	3.6	3.6	16.2	3

주 1) 부칙의 시행일 등을 감안하여 2024년은 6개월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3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1항)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학·법학·경제학·건축학·건축공학 등 교육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그 밖에 교육 및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항)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항)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 제4조의4 (위원회의 조정 등)	(제1항) 위원회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위치·규모·설치기준 등에 관한 분쟁 2.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설치 관련 비용에 관한 분쟁 3. 개교시기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제2항)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5항)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3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 의 구성·운영)	○	
2	안 제4조의4 (위원회의 조정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아니나, 교육부에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소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를 위해 위원 정수는 최대 정수인 1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안 제4조의3제3항)” 1명을 제외한 9명이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인 것으로 가정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2023년 교육부 각목명세서의 교육시설 관련 회의 횟수를 참고하여 연 2회로 가정
 - 교육부 교육시설과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및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등은 모두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수당 단가의 경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에 따라 20만원으로 하고, 해당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 장시간 회의에 따른 추가비용, 회의안전 검토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회의개최에 따른 부대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하였음을 고려하여 2024년은 1회 개최 비용만을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00만원(연평균 300만원)으로 추계
 -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9명) × 연간 회의 횟수(2회) × 수당 단가(20만원)
 - 2024년은 1회 개최

1)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연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1.8	3.6	3.6	3.6	3.6	16.2	3

IV. 부대의견

- 위원회 개최횟수는 2023년 예산각목명세서(교육부)의 교육시설 관련 회의 횟수를 참고하였으며, 개최횟수 등이 바뀔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